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받거나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 공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55조의5).

II. 검토의견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 시 결격사유 신설

안 제255조의5제2항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승인취소 사유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받거나(제1호),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제6호)¹⁾ 공인이 취

1) 「관세법」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취소)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2.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의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255조의3제3항에 따른 정지 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5. 제255조의3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을 받을 수 없도록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제도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255조의5제1항제6호(종전의 제255조의5제6호)는 공인 취소 사유를 “그 밖에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²⁾로 규정하여 그 구체적인 공인 취소 사유를 「관세법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다른 공인 취소 사유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인을 제한하는 것은 문언상 과도하다고 보일 여지가 있고, 향후 「관세법 시행령」의 개정예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이 제한되는 사유를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취소사유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되도록 수정함.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법률 시행 전에 공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경우에는 공인 취소 시 재공인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측면을

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및 제275조의2부터 제27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고려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률 시행 후에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u>취소</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u>기관은</u>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u>재공인</u> 받을 수 없다.	제255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u>취소 등</u>)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제6호(<u>수출입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u>)--- <u>자는 공인이</u> ----- ----- <u>다시 공인</u> -----.
부 칙	부 칙
<신 설>	제2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의 공인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5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